

의안번호	제 484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4월 일 (제 289 회)

**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0년 4월 6일

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4. 6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임용고시의 응시기회를 연장하여 우수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,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정하였던 장학금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함(현행 조례 부칙 제2항 단서)
- 나.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임용시험 의무 응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(안 제6조)
- 다.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함(안 제4조제2항, 안 제7조)
- 라. 장학금 반납의 면제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규칙의 면제근거 마련(안 제10조 단서)
- 마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2010년도 추경에 반영 예정

나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다. 기타

1) 신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2009.11.2. ~ 11.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"를 "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"를 "충청북도교육감"으로, 청주교육대학교(이하 "청주교대"라 한다)를 "청주교육대학교"로,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(이하 "공립초등학교"라 한다)"를 "충청북도립초등학교"로, "초등교사"를 "우수한 초등교사"로 각각 한다.

제2조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, "청주교대"를 "청주교육대학교(이하 "청주교대"라 한다)"로, "공립초등학교"를 "충청북도립초등학교(이하 "초등학교"라 한다)"로, "교육감"을 "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"로 각각 한다.

제3조 중 "공립초등학교"를 "초등학교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제2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2조에 따른"으로, "범위 안에서"를 "범위에서"로, "기타"를 "그 밖의"로 각각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.

제5조 중 "공립초등학교"를 "초등학교"로 한다.

제6조 중 "2년간"을 "4년간"으로, "다만"을 "다만,"으로 각각 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복무의무) ①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.

1. 재학생 1학년, 2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: 4년

2. 재학생 3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: 3년

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

2. 병역복무와 해외유학,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

3.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

제8조(장학금 지급정지)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

1. 「병역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

2. 학업을 정지한 때

3.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중 "다음 각호의 1" 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장학금의 반납)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.

다만,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
2. 제7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3.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때

부칙 제2항 중 "2007학년도"를 "2012학년도"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조례</u></p>	<p><u>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청주교육대학교(이하 “청주교대”라 한다)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,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(이하 “공립초등학교”라 한다)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<u>초등교사를</u>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,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충청북도립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<u>우수한 초등교사를</u>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장학금 지급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(이하 “<u>학생</u>”이라 한다)는 청주교대에 입학한 학생 중, 졸업 후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, 청주교대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<u>교육감</u>이 정한다.</p>	<p>제2조(장학금 지급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(이하 “<u>학생</u>”이라 한다)는 청주교육대학교(이하 “청주교대”라 한다)에 입학한 학생 중, 졸업 후 충청북도립초등학교(이하 “<u>초등학교</u>”라 한다)에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, 청주교대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<u>충청북도교육감</u>(이하 “<u>교육감</u>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</p>
<p>제3조(장학생 수)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이내에서 매년 공립초</p>	<p>제3조(장학생 수)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이내에서 매년 초등학교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등학교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.</p> <p>제4조(장학금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 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.</p> <p>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, 지급기간을 이유로 제 7조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.</p>	<p>교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.</p> <p>제4조(장학금) ① 제2조에 따른 장 학생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그 밖의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 (이하 “장 학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하되 예산 의 범위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 다.</p> <p>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4년 이 내로 한다.</p>
<p>제5조(장학생의 의무)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, 장래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장학생의 의무)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, 장래 초등학교 교사가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.</p>
<p>제6조(임용시험의 응시) 장학생이 청주교대를 졸업한 때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(이하 “임용시험”이라 한다)에 응시하여야 하며, 불합격한 자는 계속하여 2년간 응시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6조(임용시험의 응시) 장학생이 청주교대를 졸업한 때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(이하 “임용시험”이라 한다)에 응시하여야 하며, 불합격한 자는 계속하여 4년간 응시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
<p>제7조(복무의무) ①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</p>	<p>제7조(복무의무) ①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교</p>

현 행	개 정 안
<p>공립초등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병역복무와 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과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 <p>제8조(장학금 지급정지)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학업을 정지한 때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<p>② 교육감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</p>	<p>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학생 1학년, 2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: 4년 제학생 3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: 3년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병역복무와 해외유학,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 <p>제8조(장학금 지급정지)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병역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학업을 정지한 때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<p>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</p>

현행	개정안
<p>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(장학금 지급중단)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.</p>	<p>제9조(장학금 지급중단)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.</p>
<p>1. ~ 5. (생략)</p>	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장학금의 반납) ①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. <단서신설></p>	<p>제10조(장학금의 반납)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.</p>
<p>1.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</p> <p>2.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</p> <p>3. 제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</p>	<p>1. 제6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</p> <p>2.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</p> <p>3.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때</p>
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②(적용례)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지급기간은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②(적용례)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지급기간은 2012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.</p>